

제333회

임 시 회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25-37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추진배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우리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 추진개요

- 수립기간 : 2025년 ~ 2034년, 10개년(중기계획)
- 주요내용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 5개 부문 29개 과제
 -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 8개 부문 36개 과제
 - 2030년 탄소중립 유지 목표 : '18년 대비 132.4% 감축
 - 2034년 탄소중립 유지 목표 : '18년 대비 141.2% 감축
- 추진절차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작성
 -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 반영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군의회 보고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충청북도·환경부 제출

3. 추진경과

- 2022. 4.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023. 1. 설문조사 실시
- 2023. 12.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 준공
 - 前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2024. 3.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보완 착수
- 2024. 4.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5. 2.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추진 및 수정·보완
- 2025.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5.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전 설명(간담회)
- 2025. 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회 보고
- 2025. 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출(도·환경부)

4.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살맛나는 탄소중립 도시 영동
- 목 표 : 군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추진전략 및 대책 : 붙임

5.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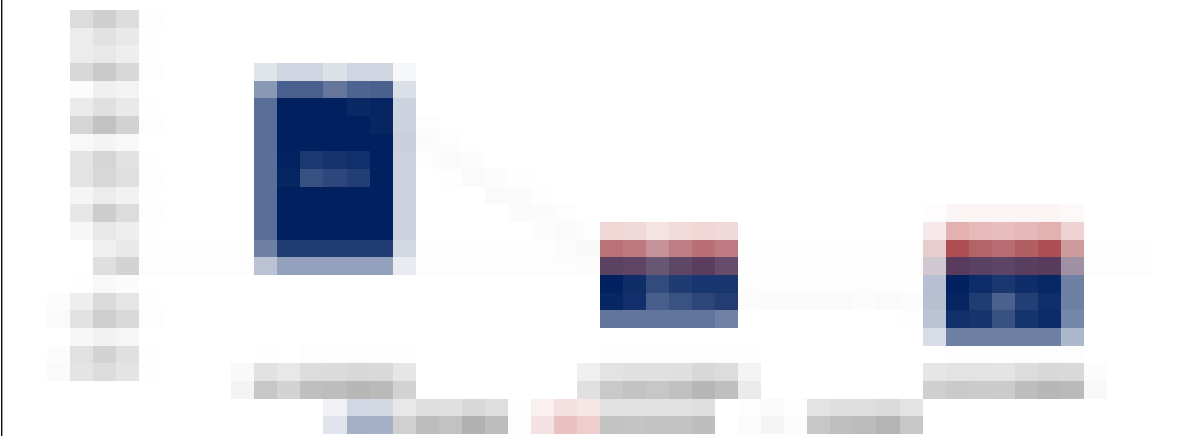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제78조
-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 첨 부 1.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 1부.
2. 관계법령 1부.
3.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 1부(별첨). 끝.

□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0%(132.4%), 2034년까지 100%(141.2%)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56쪽)
- ※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2034년 순배출량 대비 감축률



(단위: 천톤CO2eq)

구분	기준 (2018)	2030년				2034년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률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률
계	375.2	-71.4	50.1	-121.4	100%*	-89.0	65.7	-154.7	100%*
건물	184.6	132.0	3.4	128.6	30.3%	119.7	4.0	115.7	37.3%
수송	103.3	95.6	12.1	83.5	19.2%	92.3	15.1	77.1	25.3%
농축산	52.2	57.4	0.3	57.1	-9.3%	57.8	0.3	57.4	-10.0%
폐기물	35.1	22.9	0.0	22.9	34.8%	20.5	0.0	20.5	41.5%
흡수원	-474.0	-379.2	34.2	-413.5	-	-379.2	46.3	-425.5	-

* 목표연도의 감축률이 100% 이상일 경우 100%로 표기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5개 부문 29개 과제)

부문	구분	관련부서
건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확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	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경제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산림녹지과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	환경과
수송	전기버스 보급	건설교통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향상	건설교통과
	전기자동차(승용) 보급	환경과
	전기자동차(화물) 보급	환경과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환경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환경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환경과
농축산	한우 비육기간 단축	과수축산과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과수축산과
	저메탄 조사료 지원 확대	과수축산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과수축산과
폐기물	생활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환경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	환경과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환경과
흡수원	숲가꾸기(큰나무)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어린나무)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조림지)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산불예방)	산림녹지과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산림녹지과
	조림(경제림)	산림녹지과
	조림(큰나무조림)	산림녹지과
	가로수 확대	산림녹지과

□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8개 부문 36개 과제)

부문	구분	관련부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관리	보건소
	식품안전 관리강화	가족행복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보건소
	미세먼지에 안심할 수 있는 여건조성	환경과
	농축산물 기후변화 피해 저감	과수축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및 감염병 관리	과수축산과
	농축산 부문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과수축산과,건설교통과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산기술 보급	과수축산과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환경과
	오염원 유입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환경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상수도사업소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재난사고 대비 사전대응체계 마련	재난안전과
	산림녹지 확충 및 보호	산림녹지과
	재난재해 취약지역 정비	재난안전과
	생태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환경과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민원과
	효율적 공유차량 관리	재무과
	상하수관망도 활용 지하시설물 DB구축	행정과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환경과
국제협력 및 지자체간 협력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행정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환경과
	충청북도 연계 탄소중립 정책 추진	환경과, 충청북도
	자발적 탄소거래 활성화	환경과, 충청북도
교육·소통	주민대상 환경교육	환경과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과정 마련	환경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참여	환경과, 충청북도
	탄소중립 실천협력체계 마련 및 운영	환경과, 충청북도
녹색성장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	미래전략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제과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양수발전소 건설	미래전략과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경제과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	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경제과
충북 연계 탄소중립 인력양성	대학연계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가족행복과, 환경과
	생태 지속가능성 관련 인력 양성	환경과,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

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각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38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 관리)

다. 필요성

-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시설 이용활성화 도모
-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 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함

라. 위탁사무 내용

○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국민체육건강센터 시설물(건축물, 기계·전기·소방 설비 등)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국민체육건강센터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11㎡)

○ 주요시설 : 수영장(25m×7레인), 돌봄센터,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 풋살장, 조깅트랙, 옥상정원, 주차장, 부대시설 등

구 분	면적(㎡)	주요시설
계	4,090.37	
지하 1층	574.64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빗물저수조
지상 1층	1787.89	수영장[7레인(위킥풀 포함), 25m], 사무실, 돌봄센터,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샤워실 등)
지상 2층	548.99	헬스장, 소규모체육관, 부대시설 (화장실, 탈의/샤워실)
옥상	1,178.85	풋살장, 조깅트랙

※ 돌봄센터(145.67㎡) 제외

바. 위탁기간

○ 2025. 05. ~ 2026. 12.(1년 8개월) *개관 25년 7월(예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비용 : 금1,755,900천원

- 2025년(8개월) 721,700천원 / 2026년(12개월) 1,034,200천원

※ 붙임 위탁비용 산정 참고

아.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격 : 지역체육회 또는 지역장애인체육회
- 선정방식 : 수의계약(영동군체육회)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관리)

-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